

-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-

조례안 심사보고서

○ 일 시 : 2024. 5. 28.(화) 10:00

○ 장 소 : 본회의장

○ 안 건

-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회 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4. 5. 3.

나. 발 의 자 : 김종복 의원 외 6인

다. 회부일자 : 2024. 5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4년 5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종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한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최신화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조직과 직제 등을 최신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「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심의·의결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수정안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4. 5. 3.
- 나. 발 의 자 : 김미영 의원 외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24. 5. 7.
- 라. 상정일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4년 5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인구, 면적 등 요건이 대등한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음.
화성시와 유사한 조건의 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.
이에 상생·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과 교류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교류를 통해 상생·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.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우호·자매도시 간 상호 공동번영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나, 인구·면적 등의 요건이 대등한 경우로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상호 간 발전 및 교류 지속 가능성으로 확대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,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